**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이동하역장비 운영도급(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탁운영의 범위 및 내용**
   1. 본 위탁운영의 대상 장비는 “갑”이 소유 또는 임차 한 모든 이동하역장비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의 전반적인 관리 및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단, 장비의 운용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류공급 및 정비는 “갑”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이 위탁한 이동하역장비로 터미널 전반의 상,하차 및 이송작업을 수행한다.
   3. **장비 가동조건 : 이동하역장비 7기에 대해 365일 24시간 가동**
   4. **제안된 도급비 총액을 12개월 분할하여 월 고정도급비 정산**

※ 사무기기, 피복 등 일체 간접비 포함

* 1. **도급수행 종사자의 관리**
     1. “갑”과 구별이 되는 피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피복 지급은 “제안자”가 부담
     2. 업무를 지휘, 감독할 별도의 인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갑”은 “제안자”에게 자신 소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관리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함. 단, 이 경우 필요한 설비는 “갑”이 제공
     4.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제안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며,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 증대를 위해 “갑”이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세구역 출입 등과 관련한 인가(변경 시 포함)는 “제안자”가 득하여야 한다.
     6. “제안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 및 다음 각 목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진다.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 보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체의 책임
        + 보안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1.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1. **손해배상**
      1. “제안자”는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업지연, 안전사고 등으로 “갑” 또는 “갑”의 관련 종사자 및 제 3자 등에게 법률상, 사실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안자”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
      2. “갑”이 “제안자”에게 상기 항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경우에 “제안자”는 “갑”에게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제안자”에게 지급할 도급비와 상기 항의 손해배상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2. **보험가입**
      1. 조업참여 시, 연 2회 조업 참여 인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및 법정 의무보험 가입 서류 제출 의무화 (관련서류 미제출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여 배제)
      2. “제안자”는 작업수행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및 화물손상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1회 건당 보상한도 10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료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보장한도를 초과하거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자”는 계약기간 거래금액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계약 불이행,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액을 해당 보험으로 충당 할 수 있고, 손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갑”은 “제안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2. **안전 및 사고 관리**
   1. **안전관리**
      1. “제안자”는 “갑”의 사업장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제안자”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월 1회 시행)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제안자”는 교육생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 이수 후 장비 탑승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4. 도급업무에 채용 및 투입 되어지는 종사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고관리**
      1. 도급 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갑”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및 협조해야 한다.
      2. “제안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서, 경위서 및 안전교육 결과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할 의무를 진다.
      3. “갑”이 위탁한 장비에 대한 사고 관리는 “제안자”의 의무이며, 도급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적/물적/도난)에 대해 “제안자”가 전적으로 책임 진다.
3. **비치 문서**
   1. 근무일지
   2. 근무계획표 (월간, 연간)
   3. 안전교육 등 교육철
   4. 직원 신상기록서
   5. 기타 감독자가 위탁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문서